

[별지 제31호서식] <개정 2023. 5. 3.>

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 기성실적 증명(신청)서										처리기간 즉시											
신청인	①상호				②대표자																
	③영업소소재지				④업종 및 등록번호																
공사내역																					
⑤종합공사명																					
⑥현장소재지(번지까지 기재)				⑦공사지역																	
⑧원도급공종(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」 제25조에 따른 공종을 말합니다)																					
⑨연도	⑩계약 연월일	⑪착공 연월일	⑫준공 연월일	⑬종합공사 기성액								업종별 기성액(기 증명사항)									
				⑭세부공종 (전문공사 업종)								⑮기성액									
				조	천	백	십	천	백	십	만	천	조	천	백	십	천	백	십	만	천
													계								
⑯기타(공사의 규모·공법·공동 도급내역 등)																					
년도중 위와 같이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른 하도급 종합공사 기성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.										수수료											
										없 음											
년 월 일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 귀하																					
위 사실을 증명합니다. 년 월 일 수급인 ·상호 ·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 ·대표자 성명 ·영업장 소재지 ·전화번호																					
[인]																					

210mm×297mm(신문용지 54g/m²(재활용품))